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3나2006398(본소), 2023나2006404(반소) 판결
[건축주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25.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58127(본소), 2022가 합51970(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건축 신고필증

상의 건축주명익에 관하여 원고를 공동건축주로 추가하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별지 건축 신고필증 상의 건축물들에 관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4,762,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54,762,265원 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5행의 “2019. 12. 18.” 뒤에 “철원군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9행의 “공동건축주의 동의”를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동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2행의 “사정”을 “사실 또는 사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1행의 “횡령하였다.” 뒤에 “ 및 ’H와 공모하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3.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지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비용, 하자보수비용을 마치 원고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임의로 만든 정산서를 보내 미지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154,762,265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여 사기미수에 그쳤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쪽 14행의 “원고”를 “O”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5행의 “말하기도 한 점”을 “말하였고, 피고는 당시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9천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7행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154,762,265원을 미지급하였다고”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이 154,762,265원이라는 사실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9행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 채권”으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영현, 판사 조 인